

# 대법원 2020도12563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

###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451)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약)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불법 환전이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는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위반죄 방조죄(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내용)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법인 성명불상자가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무등록 환전영업을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돕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였고, 정법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송금받음으로써,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서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정법인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의 구체적 목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 1. 사안의 개요

##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9. 1. 22.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체인점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한다. 10:00부터 16:00까지 일하고, 월 400~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객이 입금한 돈 94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줘라.”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신탁 계좌를 알려줌
- 성명불상자는 2019. 1. 29.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이낙○로부터 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탁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수수료 15만 원을 제한 나머지 925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위반의 방조죄로 기소함)

### ■ 구 금융실명법

#### 제6조(벌칙)

- ① 제3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 제3조(금융실명거래)

-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 나. 쟁점

- 피고인이 인식한 성명불상자의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목적(= 무등록 환전 영업)이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의 범행 목적인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정범이 목적으로 삼은 행위(=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을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와 피고인의 정범의 고의 중 정범의 목적의 내용(= 무등록 환전 영업을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이 다른 경우, 방조범 성립의 요건인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원심(=제1심)의 판단: 무죄

- ▣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특정되지 않았음
- ▣ 피고인에게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음
- ▣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인식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였을 뿐임

## 2. 대법원의 판단

### 가. 판결 결과 : 파기환송

#### 나. 관련 법리

##### (1) 탈법행위의 의미

- ▣ 구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 ▣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라 함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 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2) 방조범의 정범의 고의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 6056 판결 등 참조).
-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는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탈법행위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방조범에게도 정범이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나, 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다. 판단 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자신이 아닌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이유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말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함**
-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환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하고(제8조),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무등록 환전 영업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불법적인 자금의 세탁,

조세포탈, 횡령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행위이므로, 무등록 환전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이 말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함

-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무등록 환전영업을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돕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였고,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송금받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하였음.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목적으로 삼은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라. 판결의 의의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들이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기 위하여 무등록 환전 영업, 도박자금 환전, 조세 포탈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약속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음
-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계좌를 제공한 경위가 위와 같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안들이 많음 →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의율하기는 어려움
- 금융실명법은 2014. 5. 28. 이 사건 규정(☞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신설하였고, 그 후 검사는 위

와 같은 사안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규정 위반죄에 대한 방조로 보아 기소하기 시작하였음

- 법원은 대체로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과 같이  
①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목적이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② 그 인식 내용과 실제 정범의 목적이 달라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들이 있어 **하급심의 판단이 유/무죄로 갈려 있었음**

-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말하는 '탈법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사건 규정 위반죄의 성립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목적이 그와 같은 '탈법행위'의 범주에 해당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의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정범이 무등록 환전 영업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금융계좌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정범의 실제 목적이 무등록 환전 영업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의 은닉이었다고 하더라도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금융계좌 정보 제공행위를 근절하고자 하였음**

- **조세 포탈** 목적으로 인식했던 사안으로,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1도1965 판결, 2021도12279 판결, 2022도2720 판결(3건 모두 원심 무죄,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이 있음

- **도박자금 환전** 목적으로 인식했던 사안으로,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1도10534 판결(원심 유죄,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은 상고기각)이 있음

-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들이 피고인에게 보다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목적이 '탈법행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정범의 행위가 '타인 실명 금융거래'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음 (같은 날 선고된  
2020도7940 판결, 2020도12561 판결. 2건 모두 원심 무죄, 상고기각)